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5년 3월 4일

신한BNPP더드림러시아증권투자자산탁제1호[주식]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1 종류A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종류A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변경 : 제41조 (환매수수료)	제41조 (환매수수료)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 종류 C-e, 종류 직판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제41조 (환매수수료)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2. 종류 C-e, 종류 직판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1 종류A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종류A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변경 :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다음과 같이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된 수수료는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1. 종류 A, 종류 C-e, 종류 직판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다음과 같이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된 수수료는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1. 종류 A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2. 종류 C-e, 종류 직판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1 종류A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종류A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변경 :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종류 A, 종류 C-e, 종류 직판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종류 A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2. 종류 C-e, 종류 직판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